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826호 2011. 5. 30.(월)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572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열람 공고 -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577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 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579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5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572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열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5.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8·9BL)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가. 주요 변경내용

(1)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변경

- 도시계획시설(소로3-21호선)폐지 → 8BL에 편입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3	21	4	특수도로	129	중로 2-228호선	중로 3-171호선	보행자 전용도로		1999.6.17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21호선	-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폐지	○가구의 합병에 따른 노선폐지 ○면적 515.4m ² 감소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계획 변경

- 8·9BL → 8BL 가구의 합병
- 8BL(19,181.0m²)
9BL(11,352.9m²) → 8BL(31,049.3m²)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계획
- 차량동선·주차시설·단지내시설물에 관한 계획 중 공동주택용지 차량출입구에 관한 사항

<기정>

- 차량출입구는 단지별로 1~2개씩만 허용함으로써 차량혼잡을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

<변경>

- 차량출입구는 단지별로 1~2개씩만 허용함으로써 차량혼잡을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

단, 가구규모 3만m²이상의 단지는 차량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량진출입 허가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추가 허용

나. 변경사유

공동주택개발에 있어 지상·지하공간의 공간활용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계획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5773)
인천광역시 서구청 검단출장소(☎560-3227)
인천광역시 서구청 검단1동 주민자치센터(☎560-3252)

4.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 참조)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577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2. 사업자성명 : 인천광역시장 송 영 길
3. 수용재결 대상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52-1
4. 열람기간 : 2011. 5. 27. ~ 2011. 6. 10.
5.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902~3)
6. 의견서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7. 본 공고에 대한 세부목록(재결신청서 및 사업자 제시액 조서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시책지원팀(☎032-560-5902~3)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수용재결 대상 소유자 명단 1부

2011. 5. 27.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수용재결 대상자 명단

구분	물건지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1	오류동 352-1	송정순	서구 당하동 895-1 성웅탑스빌아파트 116-502	검단농협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579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1.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5. 31.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가. 결정·공시대상 : 2011.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4,692필지)
- 나. 결정·공시일 : 2011. 5. 31
- 다. 결정·공시내용 : 필지별 m²당 가격
- 라. 결정·공시내용 열람
 - 서구청 토지정보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
 -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 「부동산/건축」 ⇒ 「개별공시지가」

2. 이의신청

- 가. 대 상 :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나. 신 청 기 간 : 2011. 6. 1 ~ 6. 30.
- 다.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라. 제 출 서 류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구 토지정보과, 각 동 주민센터 비치)
 - ※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 「민원서식」 란에 게재
- 마. 접 수 처 : 서구청 토지정보과
- 바. 접 수 방 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일인 2011년 6월30일 까지 소인분에 한함) 및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 접수
- 사.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

3. 문의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 560-4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